

무배당 연금전환특약II
약관

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

목 차

가입자 유의사항	3
주요내용 요약서	4
보험용어해설	5
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	6
제1조 【목적】	6
제2조 【용어의 정의】	6
제2관 보험금의 지급	6
제3조 【보험금의 지급사유】	6
제4조 【보험금의 청구】	6
제5조 【보험금의 지급절차】	7
제3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	7
제6조 【특약의 체결 및 소멸】	7
제7조 【피보험자의 범위】	8
제4관 보험료의 납입	8
제8조 【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】	8
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	8
제9조 【계약자의 임의해지】	8
제10조 【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】	8
제11조 【해지환급금】	9
제6관 분쟁의 조정 등	9
제12조 【소멸시효】	10
제13조 【전환 전 계약 약관규정의 준용】	10
제14조 【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】	10
[별표1] 연금지급기준표	11
[별표2]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	13

가입자 유의사항

□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

- 이 특약은 전환시점에 **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** 약관이며, 전환시점에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
-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 전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,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(다만, 전환 전 계약이 변액보험인 경우 전환을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제2영업일 이후)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됩니다. 이 때, 전환 전 계약은 연금전환일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.

□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

- 연금은 매월, 매3월,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또는 종신연금형의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연금액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'공시이율'을 적용하기 때문에, '공시이율'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.
-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.

주요내용 요약서

※ 아래의 사항은 약관 본문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본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(제3조[보험금의 지급사유])

- 확정연금형: 연금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(5년~40년)의 매년 계약해당일
- 종신연금형: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
- 상속연금형: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

2. 계약의 소멸(제6조[특약의 체결 및 소멸])

이 특약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보험용어해설

◦ 보험약관

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

◦ 보험증권

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

◦ 보험계약자

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

◦ 피보험자

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

◦ 보험수익자

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

◦ 보험료

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

◦ 보험금

피보험자의 사망, 장애, 입원, 만기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

◦ 보험기간

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

◦ 보장개시일

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

◦ 책임준비금

장래의 보험금,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

◦ 해지환급금

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

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 약관

※ 약관조항에 대한 '해설' 또는 '사례'는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약관조항의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

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제1조 【목적】

이 특약은 보험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가 보험계약자(이하 '계약자'라 합니다)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(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 이하 '전환 전 계약'이라 합니다)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.

제2조 【용어의 정의】

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

가. 보험기간: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.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일부터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하며,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'보험기간'이라 합니다.

제2관 보험금의 지급

제3조 【보험금의 지급사유】

회사는 매년 계약해당일(다만, 해당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봅니다)에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[별표1] '연금지급기준표'에서 정한 연금(확정연금 및 생존연금)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
제4조 【보험금의 청구】

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
1. 청구서 (회사양식)
2. 신분증 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)
3.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

제5조 【보험금의 지급절차】

- ① 회사는 제4조(보험금의 청구)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,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 다만,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.
- ② 회사는 제3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,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[별표2]'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'과 같이 계산합니다.

제3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

제6조 【특약의 체결 및 소멸】

- ① 이 특약은 전환 전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전환 전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
- ② 이 특약은 전환시점에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약관이며, 전환시점에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
-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연금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 이 때, 계약자는 2가지 이상의 연금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, 복수로 선택한 경우 연금형태별 선택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.
 1. 원금이자분할지급형
 2. 이자분할지급형
 3. 종신연금형
 4. 상속연금형
- ④ 제3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에 해당하는 연금(확정연금 및 생존연금)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제7조 【피보험자의 범위】

-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이 특약으로 전환할 때 계약자가 정한 1인으로 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환 전 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.
- ③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시점의 나이가 연금개시 가능 나이에 도달한 자에 한합니다.

제4관 보험료의 납입

제8조 【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】

-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 전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,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(다만, 전환 전 계약이 변액보험인 경우 전환을 신청한 날부터 최소 제2영업일 이후)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됩니다. 이 때, 전환 전 계약은 연금전환일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.
- ② 제1항에서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이 특약의 보험료로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남은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③ 이 특약의 계약해당일은 연금전환일로 합니다.

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

제9조 【계약자의 임의해지】

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(다만, 종신연금형 제외)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제11조(해지환급금)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제10조 【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】

- ① 이 특약의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,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계약해

당일이 속한 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이 날로부터 매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.

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 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.

【해설:공시이율】

공시이율이라 함은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을 말합니다.

③ 이 특약에서 「연계약해당일」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. 다만,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시점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.25%,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.00%,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.5%로 합니다.

【해설:최저보증이율】

최저보증이율이라 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. 예를 들어, 공시이율이 15년 동안 0.75%인 경우,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은 공시이율(0.75%)이 아닌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최저보증이율(1.25%)로,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최저보증이율(1.00%)로,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(0.75%)로 적용됩니다.

⑤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.

제11조 【해지환급금】

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'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'에 따라 계산합니다.

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.

제6관 분쟁의 조정 등

제12조 【소멸시효】

보험금청구권, 보험료 반환청구권, 해지환급금청구권,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해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
【해설: 소멸시효】

제3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 【전환 전 계약 약관규정의 준용】

-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 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,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14조 【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】

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【해설: 예금자보호법】

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.

[별표1]

연금지급기준표

(1) 확정연금(약관 제3조)

구 분	지 급 사 유	지 급 금 액
원금 이자분할 지급형	연금개시일 이후 계약 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 간(5년~40년)의 매년 계약해당일	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약자 가 선택한 기간동안(5년~40년) 연금액 을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
이자분할 지급형		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계약관 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(다만, 연금지급기 간 만기일에 만기시점의 책임준비금 지급)

(2) 생존연금(약관 제3조)

구 분	지 급 사 유	지 급 금 액
종신 연금형	연금개시일 이후 피보 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경우	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 여 지급(보증지급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 년, 100세)
상속 연금형	연금개시일 이후 피보 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경우	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 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(다만, 피보험자가 사 망할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 지급)

- (주) 1. 상기 연금지급기준표에서 '이 특약의 보험료'란 이 특약의 보험료 중 전환할 때 계약자가 정한 각 연금지급형태(확정연금형,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)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2. 이 특약의 공시이율(전환시점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.25%,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.00%,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.50% 최저보증)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 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. 다만,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 이율은 연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공시이율로 하며 이 날로부터 매 1 년간 확정 적용합니다.
3. 연금은 매월, 매3월,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는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별 연금액 을 나누어 지급받는 주기는 동일하여야 합니다.
4. 확정연금 원금이자분할지급형과 확정연금 이자분할지급형을 동시에 선

택하는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별 연금지급기간(5년~40년)은 동일하여야 합니다.

5.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되는 연금액은 '공시이율'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'공시이율'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.
6.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기간(5년~40년)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각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.
7. 연금지급기간(5년~40년) 중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8. 종신연금형의 경우, 보증지급기간(10년,15년,20년,30년,100세)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(10년,15년,20년,30년,100세)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해당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하여 드립니다.
9. 종신연금형의 경우, 보증지급기간(10년,15년,20년,30년,100세)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[별표2]

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(제5조 제2항관련)

구 분		적립기간	지급이자
확정연금 및 생존연금 (제3조)	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	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기일 (다만, 이 특약이 더 이상의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 력을 잃게 된 날) 이내	이 특약의 공시이율
		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기(다 만, 이 특약이 더 이상의 효 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을 잃게 된 날) 이후	1년이내: 이 특약의 공시이율의 50% 1년초과기간: 1%
	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		이 특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
해지환급금 (제11조 제1항)	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		1년이내: 이 특약의 공시이율의 50% 1년초과기간: 1%
	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		이 특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

- (주) 1. 확정연금 및 생존연금은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,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.
2.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, 소멸시효(제12조)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
3.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4.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/적용이율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